

CR 2009 - 3

CEO  
Report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2009. 6

류건식 · 이상우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 목 차 >

I. 검토배경 .....	1
II. 수급권 보호 및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	2
1.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 규제패턴 .....	2
2.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및 특징 .....	5
III.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9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	9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	11
3.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기준 .....	12
4.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 .....	15
I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	18
1. 종합평가 .....	18
2. 정책과제 .....	19
<참고문헌> .....	21

# I. 검토배경

---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퇴직연금 사업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수반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상충 문제가 자주 발생함.
  - 위탁자(근로자, 사용자)와 수탁자(퇴직연금 사업자 등)간의 이익상충문제(본인·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감독체계가 요구됨.
- 퇴직연금 운용 재량권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요구됨.
  -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규제는 진입관련규제, 건전성관련규제, 시정조치관련규제 등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관련규제가 중요함.
-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를 미·일 등 선진국과 비교·검토하여 보고 이를 통해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먼저 퇴직연금규제의 특징과 패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함.
- 본 연구는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적정성을 등록기준,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 측면에서 검토한 후 정책과제를 제시함.

## II.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 1.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 규제패턴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등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규제가 요구됨.
- 퇴직연금 규제 대상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수탁기관) 관련 규제, 사용자(기업) 관련 규제 등으로 분류되지만 퇴직연금 규제는 대체로 퇴직연금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표 1> 퇴직연금 규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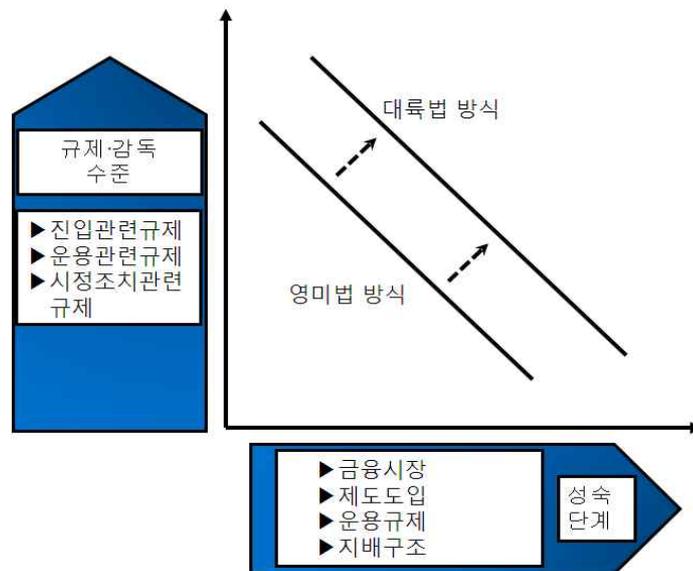
구 분	규제사항	주요 내용
규제목적	근로자 수급권보호	근로자와 수탁자간 이익상충방지
규제대상	수탁자 전체 대상	사용자, 수탁기관, 자산운용기관, 컨설팅사, 정부 등
규제단계 (규제수단)	매우 다양 (단계별 규제수단 상이)	- 사업자 관련규제, 운영 관련규제, 제도시정 관련규제등 규제단계별 규제 수단 존재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별 규제수단 차이 명확)
규제수준	높은 수준	일반 금융상품 대비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

하는 한 축으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규제수준이 높음.

- 일반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퇴직연금은 지배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상충으로부터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규제가 주축이 됨.
  - 이는 사용자, 수탁기관, 정부 등 수탁자 대상별로 수탁자 책임(충실의무, 주의의무, 자산배분의무, 정보관리의무)을 별도로 두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근로자간의 이익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운용성패가 달려 있어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복잡다기한 규제형태를 보이고 있음.
  - 즉 근로자와 사용자(기업)간, 근로자와 수탁기관(금융기관)간, 근로자와 정부간의 이익상충 문제로 인해 이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필요함.
- 퇴직연금 규제단계는 일반적으로 제도의 도입단계(진입관련 규제), 운용단계(건전성관련규제), 시정단계(시정조치관련규제) 등으로 구분됨.
  - 퇴직연금 도입단계에 대한 규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 선정, 계약, 적격기준 등과 관련된 규제, 운용단계에 대한 규제는 적립금 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제임.
  - 시정단계에 대한 규제는 범규준수 위반시, 정부 개입을 통해 징벌, 퇴출, 구제, 보상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규제임.

<그림 1> 퇴직연금의 규제감독 체계



자료 : OECD, *Pension Supervision*, 2004, p.44를 보완

- 퇴직연금 규제단계 중에서 어느 규제단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규제 하느냐는 각국의 경제상황과 법체계, 운용규제, 지배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동일한 규제단계내에서도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남.
- 퇴직연금규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은 <그림1>과 같이 금융시장 및 제도도입 등이 성숙단계로 진입할수록 진입관련 규제 및 감독기준이 자율성이 강하며,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미성숙 단계일수록 진입관련 규제 및 감독기준이 엄격한 것이 일반적임.
- 일반적으로 운용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고 퇴직연금 성숙도가 높으며 기금형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운용 및 시정조치 관련 규제수준이 높게 나타남.
- 즉 진입관련 규제수준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반면 운용관련단계,

시정조치 관련단계의 규제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이루어짐.

□ 따라서 단계별 규제수단 및 수준을 선진국과 상호비교·검토한 후 우리나라 경제상황 및 퇴직연금제도 특성에 부합하도록 규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선진국과 같은 다양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2.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및 특징

### 가. 진입규제

□ 진입규제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재무건전성 요건 및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임.

○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요건(기준) 등과 같은 규제가 대표적인 진입규제에 해당됨.

□ 진입규제를 통해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본요건을 부과하여 위험추구행위나 업무태만으로부터 시장소비자를 보호

○ 연금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탁자들이 자본요건이외에도 물적·인적요건 등 퇴직연금 영위에 요구되는 사전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부실경영을 사전에 방지함.

**<표 2> 퇴직연금 사업자 진입규제**

등록요건(기준)	세 부 내 용
재무건전성 요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련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 이어야 함 -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융위원회) · 자산운용회사(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150%이상)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 자통법에 의한 주식회사(영업용순자본비율150%이상)
인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 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야 함
물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 추어 야 함

□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6  
조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비전문인력도 인적요건에 포함하고 있는 등 진입규제의 효  
용성 문제가 제기됨.

### 나. 진입후 규제

□ 진입 후 규제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이후 실질적으로 수탁  
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반규제를 의미함.

○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자산관리계약을 어떠한 계약형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은 대표적인 진입 후 관련규제 형태임.

□ 선진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 등과 관련된 규제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원활히 작동 할 수 있도록 통제·관리함.

**<표 3> 퇴직연금 사업자 진입 후 관련규제비교**

	우리나라 (근퇴법 및 감독규정 등)	주요국 (미국, 영국, 일본)
선정기준	특별 규정 없음	안전성, 운용능력, 건전성 등을 고려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가이드라인 마련 등 · 종합평가(정량 및 정성평가)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유도
계약기준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허용 · 신탁제도 미정립 (신탁개념 등)으로 인해 본래의 신탁계약 목적과 괴리 존재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허용 · 신탁개념에 입각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태 방지 및 신탁자책임 강화 주력
적격기준	특별 규정 없음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지식요구 등 적격 및 자격기준 강화

○ 영국 등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탁자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진입 관련규제보다 진입 후 규제를 더욱 중시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형화된 진입 후 관련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한 수탁기관을 통제·관리할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표 4> 보험계약 · 예금상품 · 신탁계약의 특징**

구 분	보험계약	예금상품	신탁계약 (특정금전신탁)
재산관리	보험자산 (보험계정)	고유재산 (은행계정)	신탁재산 (신탁계정)
계약관계인	보험자, 계약자	은행, 예금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신탁개념과 달리 자기은행 예금상품(이하 '자행예금')도 허용하여 신탁이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은행은 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으로 퇴직연금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2005년 신탁업 경영이 허용되어 신탁계약으로 자산관리계약 체결이 가능
  - 다만 신탁업경영은행은 신탁업감독규정(2005. 11)의 개정으로 고유계정인 자행예금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은행권 자행예금 운용허용)함에 따라 신탁상품과 상이한 운용으로 개념상의 괴리가 발생함.

### Ⅲ.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150%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설정함.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 요원 등 필요인력을 확보하도록 인적요건 설정
  - 또한 확정기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취급 시에는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신용평가 등급획득 등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구함.
- 이러한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은 부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설정된 것임.
  - 최근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을 포기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의 퇴직연금 정착에 불안요인을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그럼에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규제 수준을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진입규제의 효과를 발휘하는데에 한계가 존재함.

- 비전문인력도 인적요건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등 느슨한 진입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표 5>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완방향**

현 행	보완방향
- 재무건전성 · 인적 · 물적요건 존재	- 금융시장, 지배구조, 운용규제, 제도도입 시기 등을 감안, <b>현행골격유지 바람직</b>
- 형식적인 기준설정으로 등록기준의 실효성 문제제기(느슨한 등록기준 형태)	- 적정한 등록기준 장치마련을 위한 <b>기준 설정 재검토 필요</b> · 운용관리기관은 연금계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b>계리인력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 필요</b>

□ 이에 반해 금융시장 불안정성,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계약형 지배구조를 띄고 있는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진입규제 수준을 높여 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함.

-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도입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규제의 강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법적 ·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낮고 양적중심의 자산운용규제를 지향하면서 계약형 지배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적절한 등록기준(연금계리인력중심의 인적기준강화 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고려한 규제수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2.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과 관련된 제반규정 및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의 마지막 종잣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 운용 역량부족, 수익성 위주 투자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 시 퇴직연금제 운영을 책임지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는 건전성, 서비스의 질, 운용성과, 수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함.
  - 일본 역시 기업이 작성하는 기본방침에 퇴직연금 사업자 선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통지에서는 운용능력, 서비스내용 등을 평가한 후 선정하도록 규정
- 미국 및 일본 등은 운용성과(수익률)위주에서 운용체제의 질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정성적 평가위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

여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문성, 자산운용능력, 서비스, 안전성 등을 고려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근로자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있음.

**<표 6>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기준 보완방향**

현 행	보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관련지침 부족으로 퇴직연금시장 혼란 가중</li> <li>·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 부재</li> <li>· 과거지표(수익률)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경향 현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li> <li>-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유를 감독기관에게 제시토록 보완</li> <li>- 정량평가에 정성평가를 가미한 <b>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방식전환</b></li> <li>· 성과평가체계 재검토 등</li> </ul>

□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관련법 및 시행령 등에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적절히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제시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일본처럼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제시할 의무(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유)를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 3.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기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자본시장통합법<sup>1)</sup>은 은행, 증권사이외에 보험사도 신탁업 경영허용조치로 인해 일정한 신탁요건이 충족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증권사는 2004년 증권산업규제의 완화조치로 신탁업 경영허용 등이 이루어져 특정금전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해짐.

□ 신탁경영은행은 신탁사업부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신탁개념에 입각한 고유 신탁업무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존재함.

○ 즉 고유 신탁업무의 역할보다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대출거래업무편중(신탁업무 소극적 수행)으로 수탁자를 위한 전문적인 신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상 자행예금의 취급이 불가능(법상으로 타행예금을 취급하여야 원리금보장이 가능)하였으나 2005년 11월 「신탁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신탁경영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을 자행예금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됨.

○ 감독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행예금을 운용할 수

---

1) 신탁업법이 자본시장통합법에 통합되어 2009년부터 시행됨.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sup>2)</sup>

□ 은행에 자행예금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권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움.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의 수탁자산을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계약을 자행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은행에 대한 이러한 예외조치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류 규정, 신탁자금 운용 제한 등 신탁법규의 다양한 행위규제와도 상반됨.

○ 불특정자산의 성격인 자행예금은 기본적으로 방화벽(fire wall)이 구축되어야 원리금보장이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자행예금으로 편입된 퇴직연금 자금이 다른 일반자금과 통합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입 목적과 성격이 상이한 자산간의 리스크 전이 개연성이 상존함.

○ 위탁자의 투자지시에 의해 신탁계약 건별로 단독으로 운용되어야 할 실적배당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은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의 자산으로 운용되는 예금상품의 성격과 상이하하며,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시장리스크 등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6항에서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109조 4항에서는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였음.

**<표 7>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약기준 보완방향**

현 행	보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험계약 및 특정 금전신탁에 의해서 자산관리계약 체결가능</li> <li>· 은행, 증권사는 신탁계약으로 체결(보험사도 신탁겸영허용)</li> <li>- 고유의 신탁개념과 배치되는 신탁계약 문제노출</li> <li>· 은행권 퇴직연금계약에 자행예금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현행과 같은 <b>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체계</b> 유지</li> <li>- <b>신탁개념에 입각한 신탁계약</b>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li> <li>· 자행예금 운용 시 본래 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li> <li>· 금융기관도산시 fire wall 작동문제</li> <li>· 금융권역간 공정경쟁 저해문제</li> </ul>

□ 따라서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자행예금 운용시 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금융기관 도산 시 방화벽 작동문제, 금융권역간 형평성 저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체계적 리스크·대리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과 신탁자산의 분리등이 필요

#### 4.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탁자책임의무로 근로자 투자교육의무가 존재하고 있을 뿐, 별도의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자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근로자 투자교육의무(사용자의 책무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가능)는 기본적인 투자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투자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영국의 감독규정에서는 연금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함으로써 수탁자의 적격 및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연기금이 대형화되고 가입자들이 시장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지배구조 확립과 수탁자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 되었기 때문임.

**<표 8> 수탁자의 적격기준(전문지식)**

구 분		세부내용
공통	신탁관련 법률	연금신탁의 특성과 의무, 수탁자 권한
	연금관련 법률	연금관련 법규, 수탁자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조항
	투자	투자가능한 자산 유형
	펀드관리	펀드관리 원칙, 펀드의 성과측정방법
DB형	기금적립	확정급여형제도(DB)의 기금적립과 관련된 원칙 사용자 재무상태 및 부채가치를 감안한 기금적립방식
	각 출	퇴직연금 제도적립금에 따른 각출수준
	전략적 자산배분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군의 적합성에 관한 원칙
DC형	기금적립	가입자의 투자위험부담 및 적립관련원칙
	투자선택	투자선택 관련 원칙

자료 : The Pensions Regulator, "Regulatory code of practice No. 7: Truste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2006. 5.

- 영국의 경우 수탁자에게 연금 및 신탁관련 법률, 투자 및 펀드관리 관련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제도의 수탁자에게는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관련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제도의 수탁자에게는 가입자의 투자위험부담, 투자선택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함.
- 이처럼 영국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리스크 감독차원에서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투자운용의 재량권이 있는 연금수탁자에게 투자지식을 습득토록 하여 효과적인 투자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으로 전문 지식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9>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기준 보완방향**

현 행	보 완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교육 의무만 선언적으로 존재</li> <li>-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 및 자격기준과 관련된 규정 전무</li> <li>· 수탁자로서의 역할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 사업자의 <b>적격 및 자격기준 강화</b></li> <li>· 전문지식(투자지식)습득요구 등</li> <li>-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b>수탁자책임 규정 체계화</b></li> </ul>

- 장기적으로 수탁개념에 입각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탁자 책임규정을 체계화하여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I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

### 1. 종합평가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용과 근로자 수급권보호 등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등 수탁자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제체계가 요구됨.
  -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근로자간의 이익상충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최소한도의 사업자 관련규제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자산운용규제가 엄격하며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입관련규제의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진입규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안정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적요건의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한 등록기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이유를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이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 운용의 역량부족, 수익성위주 투자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증가와 수급권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미·일 등은 정량평가(수익률)이외에 정성평가(서비스의 질,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음.
- 셋째, 기본적으로 현행처럼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신탁개념에 입각한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은행의 경우 신탁업감독규정(2005.11) 개정에 의해 고유계정상품인 자행예금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금융기관 도산시 방화벽 문제 및 개인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고유계정예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특정금전신탁)과 상충되고 본래의 신탁개념과도 배치되는 결과초래
- 넷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격 및 자격기준규정으로 전문지식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2. 정책과제

-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지배구조 형태, 제도 도입 시기,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진입규제와 진입 후 규제로 이원화하여 진입규제의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 본인·대리인문제(이익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수립이 요구됨.
-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와 금융기관, 근로자와 자산운용사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퇴직연금 규제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금운용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보험계리사에 의한 책임준비금 확인 및 검증)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퇴직연금 규제단계별 규제수단, 규제수준 등을 보다 정형화하여 퇴직연금의 규제효과가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일한 규제단계내에서도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의 규제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규제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규제수단의 모색이 필요함.

## 참고문헌

- 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08.8.
- \_\_\_\_\_,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8
- 류건식, 「기업연금 지급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리스크관리연구』, 한국 리스크관리학회, Vol.12., No.1., 1999.
- 류건식·손성동, 「기업연금의 도입에 따른 수급권보호제도 정립방안」,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학회, 제14권 제2호, 1998.12.
- 류건식·이경희,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비교분석」, 『보험개발 연구 제19권 제1호 (통권53호)』, 보험연구원, 2008.3.
- 류건식·정석영, 「퇴직연금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2호 (통권67호), 대한경영학회, 2008.4.
- 이민환,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문제와 향후과제」, 2005년 동계 금융심포지엄 자료, 2005.11
- 土浪 修, 「企業年金の運用機關による顧客ファンド間の内部クロス取引と 401(k)制度加入者に對する投資助言」, 『ニッセイ基礎研究所報』, Vol.25, 2002.
- OECD, *Regulating Private Pension Schemes; Trends and Challeng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2.
- \_\_\_\_\_, *Pension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ies*, 2007.
- The Pensions Regulator, "*Regulatory code of practice No. 7: Truste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2006. 5.
- World Bank,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Report No 20204-KO*, May 10. 2000.
- \_\_\_\_\_,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2005.5
- \_\_\_\_\_, "Pension Supervis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ractice and Country Context", 2005.5

## 저 자 약 력

###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 이 상 우

일본 中央大學 상학 석사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swlee@kiri.or.kr)

## CEO Report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발 행 일	2009년 6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3775-9013)로 하여 주십시오.